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제도화〉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02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 · 배준영 · 박충권 · 고동진 · 김성원 · 조지연
서지영 · 최수진 · 강선영 · 김태호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 의안번호 : 171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당별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한 공식에 따라 각 정당이 배분받을 상임위원장의 수와 선택 순서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제41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상임위원장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현행	개정안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1.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정당별로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 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 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 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 의에서 선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 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⑤ (생략)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 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 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 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선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②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⑥ -----위원장의 임 기-----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상임위원장이 <u>선출</u>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 ⑥ (생략)	-----<u>선정</u>-----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¹⁾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직위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국회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각 교섭단체에서 내정한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정하였는데,²⁾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별로 배분받을 상임위원장의 수 및 어떤 상임위원장 직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으로 선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1) 「국회법」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195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배분 방식을 구체화하여 ‘각 정당의 소속 의원 수를 그 정당이 이미 선택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하 “배정지수”라 함)이 가장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교섭단체간 갈등을 방지하고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이 도입한 배분 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 정당의 득표 수를 의석 수로 전환하는 당선자 결정 방식 중 하나인 ‘동트식(D’Hondt method)’³⁾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배정받은 직위의 수가 많은 정당은 다음 순서에서 후순위가 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배정지수가 가장 높으므로 먼저 선택권을 갖게 됨. 해당 정당이 상임위원장 직위를 1개 선택하면 분모가 1 증가하여 다음 순번에서는 배정지수가 낮아지게 되고 우선순위도 떨어지게 됨. 이러한 과정을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각 정당은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정받는 동시에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순서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임.

이 방식을 2026년 7월 현재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 직위의 배분에 적용해 보면, 다

3) 정당명부식 비례제의 의석할당방식은 크게 나눴수식과 쿼터식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나눴수식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동트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2, 3, 4 등의 차례대로 나누어 가장 큰 몫을 가진 정당의 순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김종갑,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의원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296호, 2016.8.2., p.11

음과 같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하 생략)의 순으로 상임위원장 직위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직위를 각각 배정받게 됨.⁴⁾

[표-2] 개정안의 배정지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예시

배분 회차	더불어 민주당 (161명)	국민의힘 (110명)	조국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 소득당 (1명)	사회 민주당 (1명)
1	161	110	12	4	3	1	1
2	80.5	110	12	4	3	1	1
3	80.5	55	12	4	3	1	1
4	53.67	55	12	4	3	1	1
5	53.67	36.67	12	4	3	1	1
6	40.25	36.67	12	4	3	1	1
7	32.2	36.67	12	4	3	1	1
8	32.2	27.5	12	4	3	1	1
9	26.83	27.5	12	4	3	1	1
10	26.83	22	12	4	3	1	1
11	23	22	12	4	3	1	1
12	20.13	22	12	4	3	1	1
13	20.13	18.33	12	4	3	1	1
14	17.89	18.33	12	4	3	1	1
15	17.89	15.71	12	4	3	1	1
16	16.1	15.71	12	4	3	1	1
17	14.64	15.71	12	4	3	1	1
18	14.64	13.75	12	4	3	1	1
위원장 수	11개	7개	-	-	-	-	-

* 2026년 7월 1일 정당별 소속 의원 수 기준

4)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정당별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직위의 선택을 합의가 아닌 정해진 순서대로 하게 되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정당별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한 산술 공식에 따라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회 원(院) 구성의 불확실성과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경우 정당별 소속 의원 수 외에 다른 요소의 고려나 적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향후의 여건 변화나 사정변경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⁵⁾

또한, 개정안은 본회의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정 절차는 각 정당의 내부적인 결정일 뿐 국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의 취지와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참고로, 제16대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사례가 있고, 제18대 국회의 경우 2개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음.

[표-3] 유사취지 법률안의 주요내용

김희정의원안 (제165호, 2024.6.5.)	박홍근의원안 (제990호, 2024.6.26.)	김민전의원안 (제10760호, 2025.6.12.)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각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함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며, 배분 기준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1인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함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당별 소속 의원 수÷(1+정당별 배분 받은 상임위원장 직위 수)”로 정의하고,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순서대로 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함

문 의 처

02)6788-5014